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에 미치는 영향

정은찬
(통일교육원)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에 미치는 영향

정 은 찬 (통일교육원)

목 차

- | | |
|----------------------|-----------------------------|
| I . 서론 | III. 시장화에 따른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변화 |
| II . 북한여성의 역할변화 영향요인 | IV. 결론 |

국문요약

북한 사회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여성의 역할변화는 주로 경제난 이후 경제적 자립과정에서 가계경제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북한여성의 역할은 경제적 주역으로의 위치에 따른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실제로 북한여성의 시장화에 따른 역할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장화 현상이 본격화 된 7.1 조치 전후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정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자가소득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

석되었으나, 남성과의 상대적인 수준에서는 경제활동 참여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7.1 조치 이 후에는 남성과의 상대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 확산에 따른 북한여성의 역할이 자가소득 취득이라는 관점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7.1 조치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이는 공장기업소의 '8.3 근로자' 활용과 관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 확대된 현상에서 기인되므로 이와 관련된 분석이 향후 더욱 보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북한여성역할, 여성역할확대, 시장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북한 사회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여성의 역할변화는 주로 경제난 이후 경제적 자립과정에서 가계경제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시장화 현상의 고착, 가계경제 자립생존 보편화, 신세대의 등장과 성장환경 및 교육환경의 변화, 아래로부터의 사회변화 촉진 등은 북한여성의 역할변화의 영향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그 영향력은 다양한 사회구조 변화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시장의 기능 변천과 함께 북한여성의 경제사회적 역할이 어떤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지금까지 연구된 북한시장 및 북한여성과 관련된 연구 결과물들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으나 시장화에 따른 여성 역할 변화와 관련된 심층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시장이 공식 운영된 2003년 이후 북한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하여 올바른 북한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북한여성의 역할변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시장화 현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 이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장화에 따른 기타 사회요인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여성의 역할변화 영향요인으로 북한의 시장기능을 중심으로 가족과의 관계, 조직과의 관계, 개인계발 요인을 주요변수로 정하였다. 이러한 요인의 영향은 북한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사회적 자기효능감, 가계경제 부담정도, 자녀교육방식, 경제사회변화 촉진력 등을 통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시장화가 북한여성의 경제역할 확대에 미치는 영향 및 가족과의 관계, 조직과의 관계, 개인계발 요인이 북한여성의 경제역할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세부화 된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의 확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절대적 수준을 증가시켰는가?

둘째, 시장의 확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남성 대비) 상대적 수준을 증가시켰는가?

셋째, 가족관계, 조직과의 관계 및 개인계발 등 사회적 요인은 여성의 역할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적 요인은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관련문헌 조사를 토대로 한 내용분석, 둘째, 계량분석을 통한 시장기능 변인에 의한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제고 분석, 셋째, 남북 사회통합에 주는 시사점 도출 및 분석의 한계점 고찰이다.

우선 시장의 기능적 변인, 가족관계, 조직과의 관계가 북한여성의 개인계발(생활관습 교정과

자아존중감 성취)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북한여성의 역할 변화를 어떻게 견인해내는지 분석하고, 사회적 자기효능감 고취와 경제사회적 역할 변화로서 가계경제 자립생존 주역, 자녀교육 혁신 주역으로의 등극, 아래로부터의 경제 사회변화 촉진 역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술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여성의 시장기능 강화에 따른 역할 확대 유무를 검정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여성응답자의 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북한이탈주민의 7.1조치 전후 소득변화를 조사한 자료로, 이를 이용하여 여성의 7.1조치 전후의 경제활동 참여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대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사회적 요인 변수가 경제 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함께 분석한다.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로는 종속변수로서 근로소득과 자가소득을 물가상승분을 제거한 실질소득이며, 통제변수로 금융자산, 실물자산 및 직업, 지역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이 사용되었다.

3. 기존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주요 분석 자료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의 한계는 조사 대상이 북한이탈여성이라는 점에서 현재 북한에 거주해있는 북한여성들과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 국경연선지역(함경북도·양강도·평안북도 등) 출신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기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명순(1999)은 “90년대 이후 조선녀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에서 북한을 직접 현지 방문하여 북한여성들과 면담한 내용을 분석자료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식량난으로 북한여성들의 가족생계 유지 부담이 매우 커졌으며,¹⁾ 북한여성들이 가정주부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발전에 참여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숙(1999)은 북한이탈주민 및 현지중국기업인을 심층면접조사하여 북한여성의 역할은 1990년대 이후 중대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²⁾ 이미경·구수미(2004)는 “1990년대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 연구에서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을 지역·계층 별로 분류하여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결과 북한의 주요 세 도시인 청진·신의주·혜산의 여성들을 심층면접하였고 북한여성들이 양성평등의 원칙아래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그 외 가사와 자녀양육의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음을 밝혔다.³⁾

선행 연구 결과물을 종합해보면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역할변화를 집중조명하여 가계경제 유지 부담과 자녀양육부담,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경제사회 생활 의무적 참여

1) 임순희 외,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2004.11, p. 3.

2) 임금숙, “90년대이후 조선녀성들의 사회경제활동참여의 변화”,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연변대학 여성문제연구중심, 1999), pp. 17-29.

3) 이미경·구수미, “1990년대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 (북한연구학회 2004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pp. 89-113.

등의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존연구들은 경제난 이후 국가공급 유명무실로 식량공급 단절에 의한 생존유지가 급선무였던 시기 북한여성 역할변화에 집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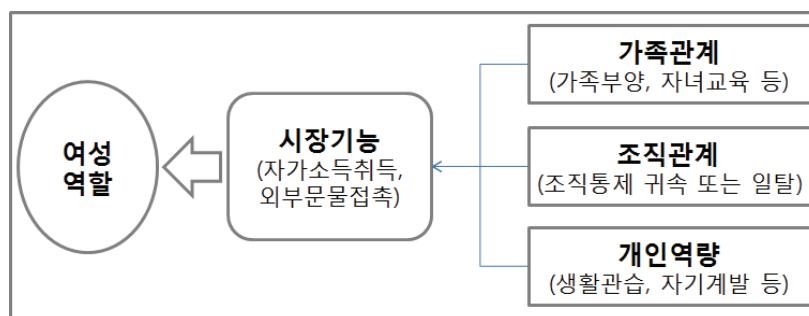
그러나 2003년 북한체제가 계획경제 하에 시장을 공식운영한 이후 시장 확산과 더불어 북한 여성의 역할은 가계, 기업, 사회 전 영역에서 제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의 기능적 변인에 의해 북한여성 역할변화는 경제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 면에서 정치적 변화까지 촉구할 동력으로 연결되고 있다. 기존 연구결과물에서는 이러한 2000년대 이후 시장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통한 북한여성 역할변화가 어떻게 촉진되는지 밝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 북한의 시장도입 이후 북한여성의 경제적인 역할 변화뿐 아니라 가계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및 개인역량 계발 역할 등을 함께 분석하여 북한의 시장화 이후 여성의 역할 변화를 규명하려 한다.

Ⅱ. 북한여성의 역할변화 영향 요인

시장화에 따른 북한여성의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면 시장기능, 가족관계, 조직관계, 개인역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특히 북한여성의 역할변화는 시장기능을 통해 기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타 사회적 환경요인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북한여성의 역할변화 영향 요인



시장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 확대는 자가소득취득, 외부문물접촉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표 1]의 2008년 북한의 가구경제활동 데이터 상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 참여율은 주로 소득과 시장관련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16세 이상의 북한 주민 가구경제활동 참가율⁴⁾

(단위: 명, %)

		총인구(A)	가계경제활동 참가인구(B)	가계경제활동 참가율(B/A)
전체	남성	8,001,786	6,285,430	78.55
	여성	9,364,983	8,193,138	87.49
	합계	17,366,769	14,478,568	83.37
도시	남성	4,939,085	3,725,953	75.44
	여성	5,747,438	4,791,884	83.37
	합계	10,686,523	8,517,837	79.71
농촌	남성	3,062,701	2,559,477	83.57
	여성	3,617,545	3,401,254	94.02
	합계	6,680,246	5,960,731	89.23

1. 시장의 기능적 변화

북한의 시장은 현재 경제적인 면에서의 재화와 자본이 유통되는 공간을 넘어 외부정보와 문화가 유입되고 유통되는 공간으로 거듭나 경제적인 변화와 사회주민 변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기능적 변천을 촉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계획경제 작동보조의 기능(생산물자 조달, 재정수입 창구, 주민 자립 생존공간), 둘째, 사회변화 촉진 매개체(instrument)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계획경제의 작동 보조

북한 시장의 경제적 기능은 계획경제체계(자재공급체계, 재정수입체계, 배급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현실에서 경제회생을 도모하는 주요 축(mainstay)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표 2] 북한주민 가계 총소득 중 비공식 부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⁵⁾

(단위: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6	2007
비중	연도별	60.5	71.0	69.1	76.2	69.0	66.6	73.3	80.0	73.5	74.9
	기간평균					70.0				74.6	

4) 정형곤·이석·김병연,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p3

5)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p.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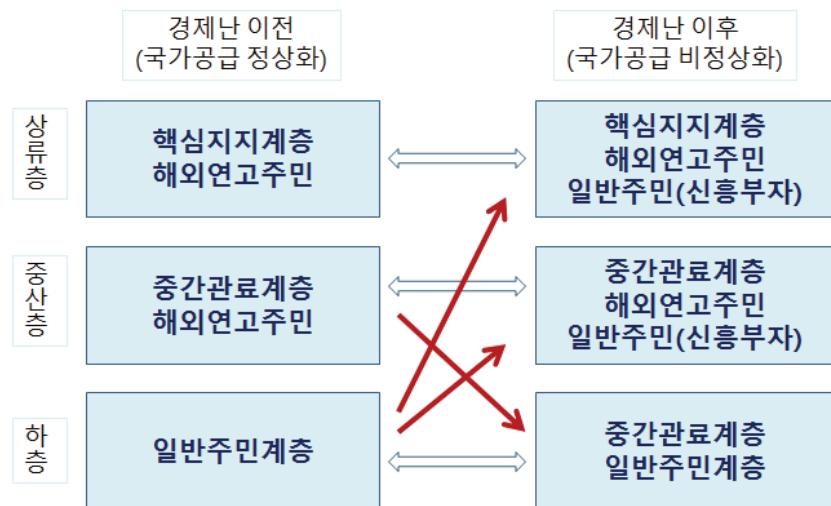
그 기능은 첫째, 국영경제의 생산물자 조달 창구(물자교류시장을 통한 공장기업소의 자율적 생산 및 운영 보장), 둘째, 국영경제의 재정수입 창구(국영기업 이익금, 장세 등의 세입), 셋째, 민생경제의 자립 생존공간이다.

(2) 주민변화의 촉진

북한의 시장은 북한사회 내부 주민변화를 추동하는 요인, 촉진 매개체이다. 정부차원의 식량 공급이 단절되고, 주민들 스스로 자립적 생존을 터득해야 했던 경제난 시기 시장은 하나의 생존장터(marketplace)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시장은 부(富)의 집적과 집중을 조정하고 시장세력(신흥부자)의 등장을 추동한다. 이 과정에 계층분화 및 계층 재구조화 현상이 유발되고 아래로부터의 주민변화(생존방식·문화행태·정치의식변화)가 승화되고 있다.

[그림 2] 생활수준 변화에 따른 사회계층 이동



현재 북한의 시장은 재화·자본·정보·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장이다. 동시에 북한 사회 변화를 촉진시키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을 통해 확산되는 북한주민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식 고취, 정치적 의식변화, 소유권 분화(소토지(화전)와 주택 암거래 등), 정치적 계층 재구조화(경제난 이후 북한의 중간계층은 일반 서민계층으로 하락, 일반서민계층 중 신흥부자가 된 계층은 중간계층 이상으로 급부상) 등의 현상들은 북한사회 내부 변화를 추동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시장의 기능적 변인은 시장 확산에 의해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문화적인 변화, 정치의식 변화가 촉발될 외부정보의 접촉, 이를 통한 외부세계 동경 등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2. 가족관계 요인

가족관계는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가정경제로 회귀한 북한여성들이 2003년 시장 운영이 공식화된 이후 세대주인 가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가계경제 자립생존 주역으로 거듭난 것과 연관된다.

북한여성의 가사노동부담, 가계경제 자립부담, 자녀양육부담, 사회발전 참여부담이 다중으로 겹쳐있는 상황이 경제난 이후 2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다중부담을 지고 있는 당사자인 북한여성들이 사회적 직위보다 시장에서의 부의 축적에 집중하며 생활패턴을 개인과 가족 중심으로 변화·고착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북한에서의 가정은 사회의 기층 생활단위인 동시에 최저 생산단위이다. 특히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실현의 학습장이기도 하다. 사회주의대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세포로서 북한의 가정은 ‘가정혁명화’를 중시하며 최고지도자 중심의 일심단결에 가족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의 가정에서 여성은 사회적 책무와 자애로운 어머니상 모두를 요구받는다. ‘역사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한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묘사되는 북한 여성은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 생산자로서의 혁명성, 노동계급성을 발휘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자녀양육을 담당해야 한다.

북한여성의 가정에서의 지위는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7.30.)이 제시된 이후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보험 및 교육권리 보장 등의 혜택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면이 대부분이다. 특히 1990년 ‘가족법’이 제시되면서 전통적 가족제도 유산의 답습으로 양성평등 이념에서 일부 이탈한 부분이 있어 법률적 규정만으로 여성의 실질적 지위를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식량공급이 중단되고 비공식경제활동으로 생존을 해야 했던 시기 여성들은 가계경제유지 부담을 현실적으로 안게 되었고 결과 가족관계에서 남편을 세대주의 역할을 대신하여 가계경제를 운영해야 했다. 2010년 이후 북한여성의 역할은 순수 가계경제 유지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 활동을 통해 외부사조를 접촉하고 개인 수중에 부를 축적하면서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이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3] 북한의 가족법⁶⁾**▣ 북한의 가족법(6장 54조)**

- 1990.10.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채택, 1993.09.23. 제35호로 수정보증
- 2004.12.0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8호로 수정보증, 2007.03.20. 제2161호로 수정보증
- 2009.12.1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20호로 수정보증

▣ 주요 내용

- 1장 1조: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 1장 4조: 인간의 존엄과 권리들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통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 2장 10조: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 사이이거나 인척이었던자 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
- 3장 18조: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 3장 20조: 리혼판결은 확정된 때로부터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 3장 23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에게 그가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 3장 37조: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 자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성원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하며 그들이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한다.
- 4장 40조: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미성인과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41조: 조부모, 형제자매 등)
- 5장 47조: 상속인들 가운데서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에게 차례지는 뒷은 나머지 상속자들에게 상속된다.

이 결과 조직과의 관계에서도 조직에 순응하지 않고 일탈을 번복하고 있으며, 뇌물을 통해 조직생활을 대체하는 경향들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탈은 북한여성의 역할변화에서 체제순응적 관점을 자아존중감 성취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대체시키는 역할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3. 조직관계 요인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전 국가공급이 비교적 정상화되었던 시기 북한여성의 정치조직 생활 참여는 정례화 된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월 2회 진행되는 강연회(주요 수요일에 진행된다고 하여 수요강연회), 매주 진행되는 정치사상학습(토요학습), 선전선동활동 참여를 통해 충실했음을 검증받아 표창, 승진, 당에 입당하려는 여성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특히 매주 1회 진행되는 정치조직 생활총화에 참여하여 자기비판과 호상(상호)비판을 강행하는 등 조직성원으로서의 규약을 준수 및 조직생활 낙오자에 대한 사상투쟁회의에서 날선 비판과 비난을 신랄하게 하기도 하였다. 대중동원운동⁷⁾, 선거운동, 지도자 및 체제 선전활동, 모내기전투·가을걷이전투 등의 사회노력동원, 충성의 외화벌이, 퇴비생산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였다.

경제난 이전 북한여성의 조직생활 참여는 체제불신 및 지도자 불신표출이 거의 없이 조직생활

6) 북한법연구회, “2016 최신 북한법령집”, 2016.

7) 북한의 대중동원운동은 1946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1957년 천리마운동, 1970년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1980년 80년대속도창조운동, 1990년 90년대 속도창조운동, 김정일 통치시기 2000년대 희천속도창조운동, 김정은 통치시기 마식령속도창조운동(2013), 조선속도창조운동(2014), 만리마속도창조운동(2016)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정을 잘 받기 위한 북한주민 스스로의 충성표현이 비교적 높이 나타나는 등 의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종결할 수 있다.(단, 단순 불평불만 표출은 일부 주민에 한하여 소극적 범위에서 잔존)

또한 조직책임자(당, 그 외 외곽조직)의 조직생활 참여에 대한 통제 및 규제가 중앙집권적 작동원리에 맞게 강행되어 조직생활 불참자에 한한 정치 조직적·법적 이중 징계가 강력 작동하였으며, 이로부터 수령제일주의·집단주의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었던 조직생활 환경이 동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조직관계는 자립적 생존방식 변화, 외부사조 유입에 의한 문화행태 변화를 동반한 가치관 변화와 함께 형식적인 조직생활 참여 및 기피현상 보편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제해야 할 조직책임자들까지 사회적 일탈 증가 및 통제가 어느 정도 완화된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책임 소홀, 개인 이익을 중시하는 해이된 도덕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다.

[그림 4]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조직관계

공적영역	사적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탈 증가-> 중앙집권적 위계질서 균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정책 집행 및 통제 형식화, - 집단주의 가치관 변화 ○ 공적으로 사회적 일탈 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기업소 운영 위해 조직생활 불참 목인: '8.3근로자' 양산 - 조직책임자의 도덕적 해이 증가 생계유지 목적으로 조직구성원과 결탁하여 뇌물을 수수, 생활총화 기록 조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유지 위한 조직생활 기피 보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 목적 이유로 조직생활 불참 - 진단서 제출 후 생계 해결 ○ 생활총화에서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의 형식적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약속하고 비판 - 뇌물을 주고 서신 혹은 전화로 대체 - 조직책임자와 결탁-> 평정서를 위조하여 이를 통한 신분 등극 시도

김정은 체제는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며 조직생활 기피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외부문물을 접촉하였거나 유통시킨 현상, 사상의식 변화 및 체제이탈 주민에 대한 공개처형을 시행하여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사상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말씀과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에 준한 정치생활총화 통제 강화⁸⁾하며 자녀교육에서도 여성들이 사상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도록 사회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도자 중심의 일심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8) 데일리NK, “북한, 사상통제 강화..‘10대원칙’ 따른 총화지시”, 2013.9.23./www.dailynk.com

북한 소식통은 ‘중앙당에서 이번에 바뀐 10대원칙에 맞는 총회를 진행하라는 포치(지시)가 내렸다. 생활총회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 총회방향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꼼꼼히 결함이 다 나올 때까지 진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전하였다.

총회방향 (1) 모심(보위)사업: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및 초상휘장(배지), 유화작품 등 김씨 일가 우상화작품 잘 모셨는지에 대한 총화, (2) 유훈관철 사업: 당 기본구호 및 1호 말씀(김정은 등 최고지도자의 말씀) 등에 따라 행동하였는지 여부, (3) 조직생활: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어떤 관점으로 분공을 수행했는지 여부, (4) 가정혁명화: 자녀와 부부간에 서로 얼마나 당의 요구에 맞게 관계를 유지했는지 각각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0대 원칙에 기초한 정치 생활총화가 형식상 진행되고 자신의 잘못을 대중 앞에서 공개 비판하는 것을 서신·전화로 대체, 조직생활 평정서를 놔물을 주고 위조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⁹⁾ 또한 외부사조 유입에 의한 주변세계(한국, 중국 등)동경의식 확산, 외부 사회문화 풍조가 북한 내부에 유행되어 한국 가요·미국 팝송·디스코 모방 등 정치조직 생활 규칙과는 위반되는 외부문물 선호현상이 확산¹⁰⁾되고 있다. 특히 통제하는 자인 조직책임자와 통제받는 자인 조직구성원 간 ‘생존’을 목적으로 한 협력·결탁에 의해 조직생활 기피 및 불참은 지속적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정은 체제는 북한사회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직시하여 최근 외부사조 유입 차단을 사회통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 정치조직 생활 기피 및 형식적 참여는 가치관 변화와 함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개인역량 요인

북한체제가 사상통제를 통해 여성들의 가치관 속에 3관(혁명적 수령관·혁명적 조직관·혁명적 인생관),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를 강조한 3위1체 일심단결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있지만 개인·가족·돈 중심의 개인주의·배금주의·물질지상주의로 이전→ 조직생활 일탈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즉, 수령제일주의 가치관, 체제신뢰, 집단주의 원칙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 체제의존 보다 자기자신의 삶을 중시하는 자아존중감이 더욱 향상되고 있으며, 자발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외부세계를 모방하고 동경하는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가계경제 주역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적극적으로 고취시키고 있다.

III. 시장화에 따른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변화

1. 시장화에 따른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여부

(1) 개요

본 절에서는 시장화에 따른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여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다. 시장화는 북한의 시장 거래규모를 통해 나타나므로, 시장화 측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시장 거래규모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분석이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시장규모에 대한 횡단면 또는 시계

9) 크리스천투데이, “시장 활성화, 북한 복음화에 획기적 기회”, 2016.3./www.christiantoday.co.kr

10) 2014.5.12~15일까지 열린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에는 휴대용 메모리(32ga), 로봇청소기, 태블릿 컴퓨터, 신발, 가방(캐리어 포함), 식품(강냉이 국수 등)들이 진열되었다. 2015년 북한이 공개한 판형컴퓨터(태블릿 PC)는 ‘묘향’이었다. 기존에 나온 아리랑-> 삼홍-> 룽홍에 이어 출시된 것이다. ‘묘향’에는 조선문학전집, 세계문학전집 파일이 들어있어 외부사조 및 외부문물에 대한 북한주민 관심으로 일축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열 자료 확보가 어려워, 2002년 7월 1일 임금이 인상되었던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과 이후의 급여소득 및 장사, 소토지 경작 등에 따른 자가소득 규모를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북한의 시장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시장이 공식운영 된 2003년 이후로, 2002년 7월 1일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기점으로 하는 것은 확대된 북한의 시장규모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규모가 2002년 7.1조치 이 후 변화하였는지를 측정하고, 이를 시장규모 확대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장화에 따른 북한여성의 역할 제고 여부를 분석한다.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667명을 설문대상으로 하여 그 중 여성 유효응답자 295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에서는 2002년 7월 1일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 전후로 개인의 소득 차이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7월 1일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 전후로 여성의 경제활동 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통해 북한의 시장화가 여성 경제활동 제고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자료의 여성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설문 응답자 특성

항목	세부항목	빈도	비율	항목	세부항목	빈도	비율
연령	30대 이하	87	29.5	지역	평양	11	3.7
	40대	111	37.6		함경도	114	38.6
	50대 이상	97	32.9		평안도	60	20.3
학력	중학교	220	74.6		황해도	51	17.3
	전문학교	36	12.2		양강도	29	9.8
	단과대학	13	4.4		자강도	10	3.4
	대학이상	26	8.8		강원도	20	6.8
직업	노동자	142	48.1	결혼 여부	기혼	226	76.6
	농민	71	24.1				
	사무원	27	9.2		미혼	69	23.4
	교원·의사	15	5.1				
	간부·군인	8	2.7				
	서비스	32	10.8				
합계		295	100	합계		295	100

(3) 기초통계분석

기초통계분석을 위해 여성 응답자의 소득분포를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7.1 조치 이후 명목임금이 118.91원에서 2,021.05원으로 임금 연체가 고려된 실질임금은 91.51원에서 1,534.38원으로 증가했고, 자가소득의 경우 장사소득이 2,927.4원에서 65,096.8원으로, 소토지 소득은 5,270.6원에서 43,882.4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시장이 도입되면서 근로소득 및 자가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나타내며, 이를 7.1조치 전과 후에 대한 T검정 결과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여성응답자의 월 소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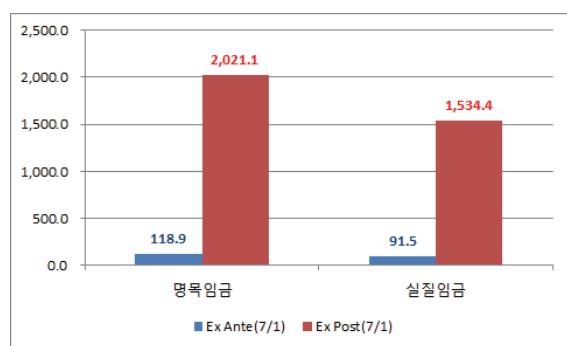
단위: 북한 원

항 목		근로소득		자가소득	
		명목임금	실질임금	장사	소토지
7.1조치 전	평균	118.91	91.51	2927.4	5,270.6
	표준편차	2.86	2.68	338.3	709.1
	95% CI	113.293 124.531	86.255 96.770	2255.569 3599.270	3812.972 6728.204
7.1조치 후	평균	2021.05	1534.38	65096.8	43882.4
	표준편차	58.27	49.25	8564.0	8017.4
	95% CI	1906.545 2135.557	1437.582 1631.174	48087.94 82105.61	27402.37 60362.33
T 통계량 (P-value)		32.607*** (0.0000)	29.251*** (0.000)	9.322*** (0.0000)	5.939*** (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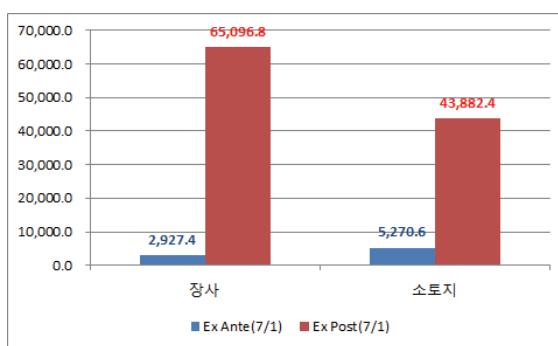
주1) 월 평균수입을 의미함

주2) ***: 1%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5] 7.1조치 전후 근로소득 비교



[그림 6] 7.1조치 전후 자가소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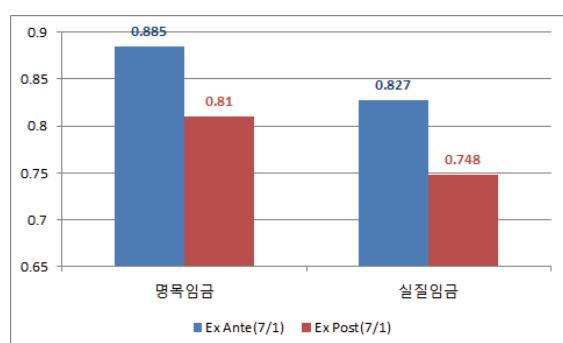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7.1조치를 기점으로 한 소득비교는 물가상승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시장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확대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남성응답자의 소득 대비 여성응답자의 소득 비율이 7.1조치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과 자가소득의 남녀비율을 7.1조치 전·후로 비교하면, 7.1 조치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조치 이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1조치 전 여성의 명목근로소득의 경우 남성대비 약 88% 수준에서 7.1조치 후 81% 수준으로 낮아졌고, 급여의 연체를 고려한 실질임금의 경우도 약 83%에서 75%로 낮아졌다. 자가소득의 경우 7.1조치 전에는 여성의 장사, 소토지 소득이 남성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7.1조치 이 후에는 오히려 여성의 남성의 소득에 장사가 99.3%, 소토지가 87% 수준까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여성소득이 전체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으로 두 그룹의 비율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근로소득과 자가소득 중 장사에 의한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소토지의 경우 5% 수준에서 유의하게 7.1 조치 전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자가소득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인한 소득이 7.1조치 이 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남성대비 소득비중은 7.1조치 이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소득 비중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이것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여성응답자 남성응답자 대비 소득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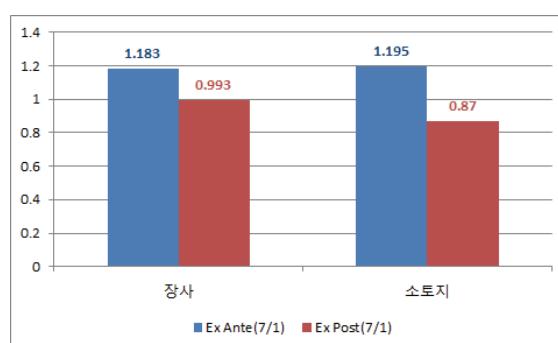
항 목		근로소득		자가소득	
		명목임금	실질임금	장사	소토지
7.1조치 전	여성/남성 비율	0.885	0.827	1.183	1.195
	여성/전체 비율	0.470	0.453	0.542	0.544
7.1조치 후	여성/남성 비율	0.810	0.748	0.993	0.870
	여성/전체 비율	0.448	0.428	0.498	0.465
Z 통계량 (P-value)		0.5362 (0.2959)	0.6116 (0.2704)	1.0696 (0.14240)	1.9190** (0.0275)

주) ***: 1%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5] 7.1조치 전후 근로소득 비율 비교



[그림 6] 7.1조치 전후 자가소득 비율 비교



여성응답자에 대한 기초 통계분석 결과 7.1 조치 이후 시장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금액이 상승한 것은 여성의 명목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킨 것으로 풀이되나, 남성/여성의 소득 비중이 7.1 조치 전후로 여성이 더 낮아진 점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남성에 비해 위축되었거나, 적어도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풀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당국의 공장기업소에 대한 국가기업이익금 납부 독촉과 연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의 세입구조에서 국가기업이 익금은 거래수입금과 함께 중요한 항목이다. 공장기업소는 국가로부터 에너지와 원자재를 공급 받아 국가가 하달한 생산계획을 수행한 이후 생산물을 도매가격으로 환산한 생산총액의 30%를 국가에 이익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국가로부터 에너지와 원자재공급을 받지 못하여 생산을 정상화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북한당국의 기조에 맞게 생산현장에 종사해야 할 근로자들을 출근하지 않고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매월 5만원(북한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업이익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 생산현장에 종사해야 할 대부분의 남성근로자들은 '8.3근로자'¹¹⁾화 되어 '8.3금액'을 사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하여 공장기업소에 납부하고 있다. 결국 가계경제 주역으로 급부상한 북한여성이 시장에서의 사경제활동을 통해 자가소득을 취득하는 역할 변화가 있는 반면, 가정의 가장인 남성은 공장기업소로부터 장사할 시간을 받아 '8.3금액'을 취득해가는 과정이 사경제활동과 연관됨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생산노동 기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계량분석을 실시하려면 개인의 자산이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계량모형 내에서 통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찰하는 2002년 북한의 시장화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고찰한다.

(4) 분석모형

분석모형은 북한여성의 경제활동을 종속변수로, 북한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설문에서 7.1 조치 전·후 비교가 가능한 변수는 소득자료로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과 자가소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설문자료는 연도별 자료가 아닌 획단면 자료이므로, 7.1조치 전과 후를 더미변수로 구분하였다. 또한 성별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모형의 통제변수로는 사회경제적 특성인 연령, 지역, 결혼 유무, 교육, 직업 등의 변수와 금융 및 실물자산규모를 활용하였다. 금융자산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공식적인 부분과 해외 친척 또는 한국에 간 가족 혹은 친척들로부터 송금 받은 부분, 장사 혹은 소토지 경작 등 비공식 활동을 통해 저축한 부분을 합산하였고, 실물자산은 보유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텔레비전 수상기, 냉장고(북한식 용어로 냉동기), 세탁기, 오디오(녹음기), 사진기, CD플레이어(비디오기계), 자전거, 재봉기의 가액을 합산하였다.

11) '8.3근로자'는 1984년 8월 3일 김정일 국방위원회장이 공장기업소 현지지도시 명명한 '8.3인민소비품'에서 '8.3'을 붙인 '부업근로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 '8.3인민소비품'은 공장기업소에서 나오는 부자재(부산물)로 전업주부 여성들이 소품을 만들어 가계경제에 보탬하라는 김정일의 지시를 담고 있다. 즉, '부업'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8.3근로자'는 곧 생산현장에 종사하지 않고 공장기업소로부터 장사할 시간을 받는 '부업근로자'를 의미하며, 이들이 납부하는 금액을 '8.3금액'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분석모형을 설정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시장화에 따른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 가설 1: 시장의 공식운영 후 여성의 실질 근로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 가설 2: 시장의 공식운영 후 여성의 실질 자가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 가설 3: 시장의 공식운영 후 여성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은 남성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 보다 높을 것이다
- 가설 4: 시장의 공식운영 후 여성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은 남성의 실질 자가소득 증가율 보다 높을 것이다

종속변수인 근로소득과 자가소득이 경제활동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효과가 제거된 실질소득으로 나타나야 한다. 7.1 조치 이후 북한 물가상승은 품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농산물 수매가 및 판매가의 경우 쌀은 수매가가 50배 상승하였으나, 판매가는 550배 상승하였고, 옥수수는 수매가 33배, 판매가 400배 상승하였다. 국정가격 인상률은 품목 별로 10배에서 100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평양 농민시장의 물가를 2002년 2월과 2003년 동월 비교 결과 1.6배에서 32배까지 상승률이 품목별로 다양하게 나타났고, 임금상승률도 9배에서 31배까지 직종별로 달리 나타났다.¹²⁾ 구체적인 품목별 물가 및 임금상승분은 [표 5]와 같다.

12) 남성욱,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 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 40호, pp.101-129, 2003

[표 5] 7.1 조치 이 후 물가 및 임금 변화¹³⁾

구분	품목		상승폭	구분	직종	상승폭
농산물 시장가격	쌀	수매가	50	임금	당 지도원	15
		판매가	550		기업소 지배인	14.5
	옥수수	수매가	33		기업소 사무원	9
		판매가	400		대외무역(과장급)	20
	콩	판매가	500		대학교수	15
		밀가루	400		대학강사	16
	육어류		12.2		일반교원	30
	양념류		67.0		유치원보모	15
	주류		78.0		의사(평양산원, 10년경력)	12
	공산품		33.0		서비스(편의시설)	25
국정가격	연료		58.0		인민배우	20
	공공요금		27.0		공훈배우	12
	의류		77.0		소장	27
	쌀		2.7		대좌	27
	옥수수		3.2		상좌	27
	두부콩		3.0		중좌	25
	식용유		4.1		소좌	25
평양 농민시장 물가	계란		2.0		대위	27
	명태		3.0		중위	30
	돼지고기		2.2		소위	31
	미원		2.9	굴진·채탄 노동자	무기능	18
	설탕		2.9		기능	20
	휘발유		24.0		고급기능	20
	경유		32.0	제철·제강 노동자	무기능	30
	비누		2.6		기능	20
	이발비		2.5		고급기능	33

13) 남성욱,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 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 40호, pp.101-129, 2003

[표 5]와 같이 물가상승분 및 임금상승분의 품목별 및 직종별 편차가 심해서 자가소득의 경우 비교적 물가상승폭이 안정적인 평양농민시장물가 평균을. 임금소득은 비교적 임금상승폭이 높은 군인과 굴진·채탄 노동자 및 제철·제강 노동자 및 일반교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의 평균값을 나누어 실질가치로 환산하였다. 실질가치 환산에 사용된 물가상승분은 6.7, 임금 상승분은 15.8로 환산되었다.

따라서 실질가치 도출을 위해 7.1조치 이후 소득을 근로소득의 경우 1/15.8, 자가소득의 경우 1/6.7 수준으로 자료의 스케일을 조정하였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자가소득을 물가상승분으로 나누어 준 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음 두 모형이 성립한다.

$$\ln \left(\frac{\dot{P}}{OM} \right)_{i,s} = \alpha_0 + \alpha_1 G_i + \alpha_2 D_s + \alpha_3 (G_i \times D_s) + \beta' X_i + u_{i,s} \quad (\text{식 } 1)$$

$$\ln \left(\frac{\dot{W}}{WN} \right)_{i,s} = \delta_0 + \delta_1 G_i + \delta_2 D_s + \delta_3 (G_i \times D_s) + \gamma' X_i + u_{i,s} \quad (\text{식 } 2)$$

단, OM: 자가소득, WN: 임금소득, G: 성별(1=여성, 0=남성),

D: 7.1조치 전/후 더미변수, (1=○| 후, 0=○| 전), X: 인구통계학적 특성

(식 3)과 (식 4)에서 $(G_i \times D_s)$ 는 성별과 7.1조치 전/후 더미변수의 교차항으로 해당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면, 7.1조치 이 후 여성의 실질소득이 유의하게 더 높음을 의미한다. (식 3)과 (식 4)는 가설 1) - 4)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각 가설은 다음 계수의 유의성을 통해 판단된다. 다만, 가설 1), 2)의 경우 모형은 여성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모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ln \left(\frac{\dot{P}}{OM} \right)_{i,s} = \alpha_0 + \alpha_1 D_s + \beta' X_i + u_{i,s} \quad (\text{식 } 3)$$

$$\ln \left(\frac{\dot{W}}{WN} \right)_{i,s} = \delta_0 + \delta_1 D_s + \gamma' X_i + u_{i,s} \quad (\text{식 } 4)$$

단, $i \in \{female\}$

가설 1: 시장의 공식운영 후 여성의 실질 근로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 (식 4)의 δ_1 의 유의성 여부

가설 2: 시장의 공식운영 후 여성의 실질 자가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 (식 3)의 α_1 의 유의성 여부

가설 3: 시장의 공식운영 후 여성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은 남성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높을 것이다

→ (식 2)의 δ_3 의 유의성 여부

가설 4: 시장의 공식운영 후 여성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은 남성의 실질 자가소득 증가율보다 높을 것이다

→ (식 1)의 α_3 의 유의성 여부

통제변수는 금융자산, 실물자산, 총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 연령, 직업, 교육, 지역 중 해당 모형에 유의한 통제변수를 선정하여 투입하였다. 각 모형에 유의한 통제변수 목록은 [표 6]과 같다.

[표 6] 통제변수 유의성 목록

	식 1	식 2	식 3	식 4
금융자산	O	X	O	X
실물자산	X	X	X	X
총자산	X	O	X	O
연령	X	X	X	X
직업	X	X	X	X
교육	X	O	X	O
지역	O	X	X	X

(5) 분석결과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식 3)과 (식 4)의 분석을 여성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결과, (식 3)에서는 7.1 조치 전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계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도입 전후로 여성의 자가소득 활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 4)에서는 종속변수를 근로소득으로 하여 분석했으나 7.1 조치 전후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1 조치 전후로 물가가 조정된 실질 근로 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식 3)의 경우 7.1 조치 전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계수값이 0.435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가소득에 금융자산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값은 0.371로 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금융자산 1% 증가 시 자가 소득이 약 0.37%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7] (식 3) 추정결과

자가소득	계수	표준오차	t	P> t
D_s	0.435***	0.130	3.36	0.001
금융자산(로그)	0.371***	0.089	4.15	0.000
상수항	7.356***	0.176	41.75	0.000
요약통계량	$R^2 = 0.1008$, F=13.85***			

주) ***: 1%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함

(식 4)의 추정결과 북한여성의 총자산은 근로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1조치 전후로 유의한 실질소득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1조치 전후 더미변수의 계수가 0.634로 도출되었으나 유의확률이 0.634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의 경우 1% 증가 시 근로소득이 약 0.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도 유의미하게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식 4) 추정결과

근로소득	계수	표준오차	t	P> t
D_s	0.634	0.055	0.48	0.634
총자산(로그)	0.031***	0.011	2.90	0.004
교육수준	0.867***	0.026	3.27	0.001
상수항	3.911***	0.136	41.75	0.000
요약통계량	$R^2=0.0514, F=7.23***$			

주) ***: 1%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함

가설 3과 가설 4의 검증을 위해 (식 1)과 (식 2)의 추정을 실시한 결과 두 식 모두 δ_3 와 α_3 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호도 양의 부호가 아닌 음의 부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계수가 음의 부호를 나타낸다는 것은 2002년 7월 1일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북한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7.1조치 이전에 비해 남성 대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며, 회귀분석 결과 이러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은 종속변수를 적절히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식 1)의 추정결과를 보면, 7.1조치 전·후를 나타내는 계수는 1%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자가소득의 경우 7.1조치 전·후로 충분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성별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양의 부호를 나타내어 여성의 자가소득을 취득하기 위한 경제활동 참여가 평균적으로 남성대비 높은 편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7.1조치 이후에는 남성대비 경제활동 참여가 오히려 감소했음을 교차항의 부호가 음의 부호인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부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명백히 드러난 여성의 역할감소는 없다고 풀이할 수 있다.

(식 2)의 추정결과는 성별변수의 계수가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냄에 따라 여성의 근로소득 획득에 참여하는 것이 남성대비 불리함을 알 수 있고, 교차항의 부호가 음의 부호임을 볼 때, 7.1조치 이 후에 여성의 근로소득 참여 정도 또한 낮아졌음을 말한다. 다만 (식 2)도 교차항의 부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이 아니므로, 여성의 역할이 7.1조치 이전 대비 축소되었다거나 위축되었다고 결론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식 1) 추정결과

자가소득	계수	표준오차	t	P> t
G_i	0.303	0.184	1.640	0.101
D_s	0.662***	0.195	3.390	0.001
$G_i \times D_s$	-0.241	0.235	-1.030	0.305
금융자산(로그)	0.272***	0.074	3.670	0.000
지역	0.045**	0.020	2.290	0.023
상수항	7.057***	0.207	34.110	0.000
요약통계량	$R^2=0.1099, F=8.79***$			

주) ***: 1%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함

[표 10] (식 2) 추정결과

근로소득	계수	표준오차	t	P> t
G_i	-0.188***	0.072	-2.610	0.009
D_s	0.107	0.082	1.300	0.193
$G_i \times D_s$	-0.081	0.101	-0.800	0.425
총자산(로그)	0.033***	0.010	3.220	0.001
교육수준	0.090***	0.021	4.260	0.000
상수항	4.078***	0.141	28.900	0.000
요약통계량	$R^2=0.0900, F=11.99***$			

주) ***: 1%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함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채택 여부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시장의 공식운영 후 여성의 실질 근로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 (식 4)의 δ_1 의 유의하지 않음 → 가설기각

가설 2: 시장의 공식운영 후 여성의 실질 자가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 (식 3)의 α_1 의 유의함 → 가설채택

가설 3: 시장의 공식운영 후 여성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은 남성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 보다 높을 것이다

→ (식 2)의 δ_3 의 유의하지 않음 → 가설기각

가설 4: 시장의 공식운영 후 여성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은 남성의 실질 자가소득 증가율 보다 높을 것이다

→ (식 1)의 α_3 의 유의하지 않음 → 가설기각

2. 사회적 요인이 북한 여성역할 변화에 미치는 영향

시장화에 따른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의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요인으로, 분석결과 2002년 7월 이후 여성의 실질 자가소득 취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장화에 따른 북한여성의 역할변화를 다양한 요소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조직관계, 개인역량 등 사회적 요인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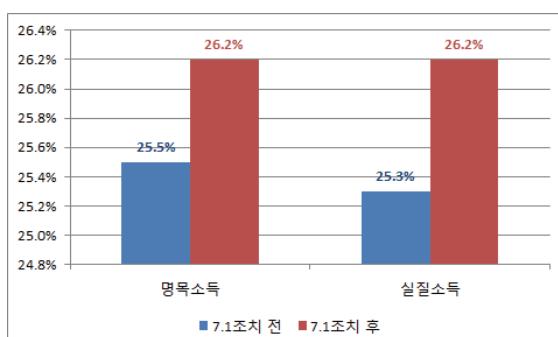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자료의 경우 7.1 조치 전후의 소득 및 자산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여성의 시장화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역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인을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수가 필요하며, 본 설문에서 사회적 요인에 대한 대리변수로 가족관계는 가구소득 중에서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직관계는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될 경우에 대한 문항을 채택하였다.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될 경우 의견을 묻는 문항의 경우 부정적 의견이 강할수록 조직관계의 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긍정적 의견이 강할수록 조직관계에 역행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간주하고, 개인역량은 자기계발에 대한 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소득을 벌기 위한 활동을 많이 시도해 본 경우를 채택하고, 전체 소득 중에서 자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집계하여 대리변수로 활용한다.

북한여성의 가구소득 중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모두 7.1조치 이후가 이 전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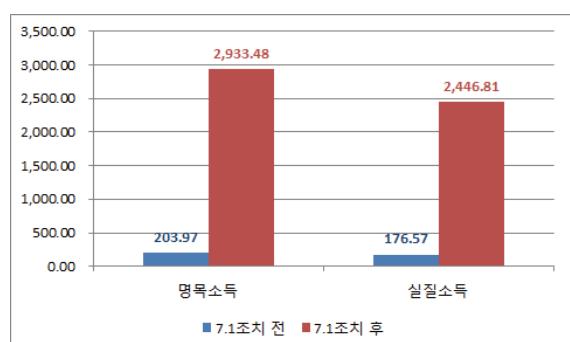
[표 11] 북한여성의 소득 비중 분포

항목	기간	명목소득	실질소득
가구 소득	7.1조치 전	203.97	176.57
	7.1조치 후	2933.48	2446.81
1인당 소득	7.1조치 전	52.02	44.74
	7.1조치 후	768.20	640.09
비율	7.1조치 전	25.5%	25.3%
	7.1조치 후	26.2%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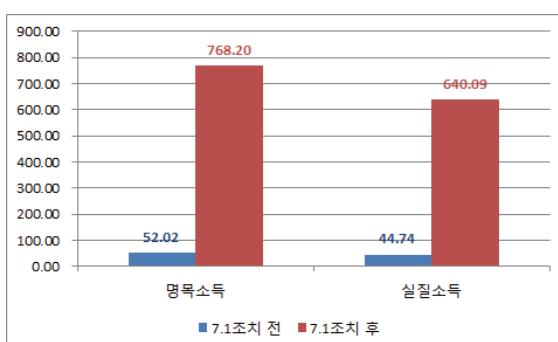
[그림 7] 북한여성의 소득비율



[그림 8] 북한여성의 가구소득 비중



[그림 9] 북한여성의 1인당소득 비중



[그림 7]을 보면, 명목소득이든 실질소득이든 7.1조치 이전보다 7.1 이후의 가구소득 대비 1인당 소득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명목소득의 경우 7.1조치 이전 월 평균 소득은 약 203.97 원으로 나타났고, 7.1조치 후에는 2,933.48원으로 나타나 7.1조치 이후 소득 비율이 약 25.5%에서 26.2%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고, 실질소득도 마찬가지 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여성의 평균 1인당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점은 여성의 가정 내에서 생계를 부양하는 역할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조직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설문 중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된다고 할 때, 의견을 묻는 9가지 문항의 긍정적 대답과 부정적 대답을 집계하였다.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12]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에 대한 의견

항목	문항	성격
1	국가공급 정상화 시기보다 생활수준상 격차가 심화될 것 같다.	부정적
2	국가공급 정상화 시기보다 성분 고려 공급물자 차별이 심화될 것 같다.	
3	국가공급 정상화 시기보다 월급수준 격차가 심화될 것 같다.	
4	사회주의 경제체제 시기보다 국가적인 혜택이 감소할 것 같다.	
5	국정가격으로 공급받던 시기에 비해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	
6	국가 식량공급을 받던 시기보다 식량해결이 나아질 것 같다.	긍정적
7	국가가 주택을 공급하던 시기보다 주거 해결이 나아질 것 같다.	
8	급여 지급 정상화 시기보다 금융자산 저축이 증가될 것 같다.	
9	국가 공급이 정상화되던 시기보다 직업수준이 향상될 것 같다.	

9개 문항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답변의 척도의 순서를 바꾸어 척도값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변수를 재구성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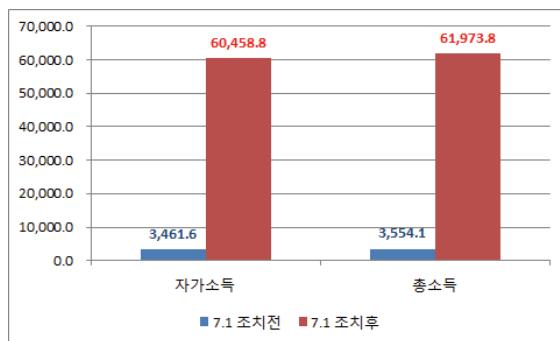
[표 13]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에 대한 의견 결과

항목	점수	
	여성	남성
전체	3.08	3.10
1 국가공급 정상화 시기보다 생활수준상 차이가 심화될 것 같다.	4.36	4.26
2 국가공급 정상화 시기보다 성분 고려 공급물자 차별이 심화될 것 같다.	2.83	2.63
3 국가공급 정상화 시기보다 월급수준 격차가 심화될 것 같다.	4.00	3.83
4 사회주의 경제체제 시기보다 국가적인 혜택이 감소할 것 같다.	3.65	3.70
5 국정가격으로 공급받던 시기에 비해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	4.29	4.27
6 국가식량공급을 받던 시기보다 식량해결이 나아질 것 같다.	1.87	2.08
7 국가가 주택을 공급하던 시기보다 주거 해결이 나아질 것 같다.	2.33	2.53
8 급여 지급 정상화 시기보다 금융자산 저축이 증가될 것 같다.	1.97	1.92
9 국가공급이 정상화되던 시기보다 직업수준이 향상될 것 같다.	2.44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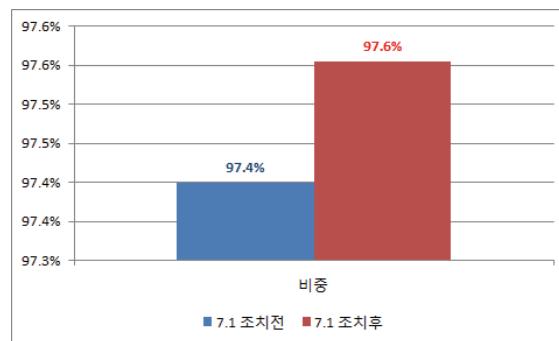
분석결과, 긍정적 문항의 경우 점수가 대체로 낮게 나타났고, 부정적 문항의 경우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 모두 평균 점수가 3점이 넘어 긍정보다는 부정적 반응이 다소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평균 점수가 남성보다 다소 작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조직에 순응하기 보다는 조직과의 갈등이 남성 대비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역량의 표현을 위해 전체 소득 중 자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소득보다는 자가소득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이는 남녀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7.1조치 이후 자가소득 비중 추이가 97.6%로 7.1 조치 이전 97.4% 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북한 여성의 자가소득을 통한 자기계발 욕구는 7.1 조치 이후 다소 증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림 10] 북한여성의 자가소득 및 총소득



[그림 11] 북한여성의 자가소득 비중 추이



북한 여성의 역할의 사회적 영향요인의 대리변수를 검토한 결과, 7.1조치 이후 가족관계와 개인역량 요인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 비중이 증가하고, 개인의 자가소득에 대한 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관계에 대한 의견은 7.1조치 전후로 나누어 볼 수는 없지만 남성 대비 조직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북한여성의 가계 경제부담 증가 및 조직적 성향에서 개인적 성향으로의 변화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증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각 영향요인에 대한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5: 7.1 조치를 기점으로 한 가구소득대비 1인당 소득 비율 상승은 7.1 조치 이후 북한 여성의 근로소득 및 자가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가설 6: 7.1 조치를 기점으로 한 전체소득대비 자가소득 비율 상승은 7.1 조치 이후 북한여성의 근로소득 및 자가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가설 7: 조직적 특성은 7.1조치를 기점으로 한 근로소득 및 자가소득 증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는 가족관계에 대한 가설을, 가설 6은 개인역량에 대한 가설을, 가설 7은 조직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가설 5는 근로소득과 자가소득의 7.1 조치 전후 차이와

가구소득대비 1인당 소득 비율의 7.1 조치 전후 차이와의 상관계수를 통해, 가설 6은 근로소득과 자가소득의 7.1 조치 전후 차이와 전체소득대비 자가소득 비율의 7.1 조치 전후 차이와의 상관계수를 통해 측정한다. 가설 7은 북한의 시장화 관련 문항들로 측정한 북한 조직에 대한 의견을 독립변수로, 근로소득 및 자가소득의 7.1 조치 전후 차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분석하려 한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¹⁴⁾

[표 14] 가설 5 – 가설 7 검정방법 요약

	가설 5	가설 6	가설 7
종속변수	근로소득, 자가소득의 7.1 조치 전후 차이	근로소득, 자가소득의 7.1 조치 전후 차이	근로소득, 자가소득의 7.1 조치 전후 차이
독립변수	가구소득대비 1인당 소득 비율의 7.1 조치 전후 차이	전체소득대비 자가소득 비율의 7.1 조치 전후 차이	북한 조직에 대한 의견 문항점수
검정방법	상관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통제변수	없음	없음	자산, 인구사회학적 변수 등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가설 5에 해당하는 설명변수(가구소득대비 1인당 소득 비중 차이)는 자가소득과 근로소득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7.1 조치 전후 값을 차분하는 것 보다는 두 값을 비율로 설정하는 것이 자가소득 차이와 근로소득 차이간의 선형관계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6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전체소득대비 자가소득 비중 차이)는 자가소득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고, 근로소득과는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자가소득 차이와 전체소득대비 자가소득 비중차이는 차분값과 비율값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가설 5 – 가설 6 검정 결과

항목		가구소득대비 1인당 소득 비중 차이 (가설 5)		전체소득대비 자가소득 비중 차이 (가설 6)	
		차분	비율	차분	비율
자가소득차이	차분	0.0048	-0.1882**	0.4845***	0.5871***
	비율	0.0148	-0.1799**	0.4807***	0.5895***
근로소득차이	차분	0.5045***	0.2029***	0.0867	0.0666
	비율	0.0048	0.1075**	0.057	0.0057

14) 가설 5와 가설 6의 경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모두 7.1 조치 전후 차이값이므로, 이를 회귀식을 통해 검정하기 위한 모형설정이 어려움. 따라서 상관분석을 통한 선형관계 유무만을 검증

상관분석 결과 가족부양책임이 커지는 것과 경제활동의 확대에는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역량의 향상도 경제활동의 확대와 일정한 선형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직관계가 시장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정하면, 다음과 같은 검정식을 설정할 수 있다.

$$\ln \left(\frac{M_{post}}{M_{ante}} \right)_i = \alpha_0 + \alpha_1 \ln (Score)_i + \alpha_2 G_i + \alpha_3 \ln (Score)_i \times G_i + u_{i,s} \quad (\text{식 } 5)$$

종속변수는 7.1조치 전·후의 소득의 증가율을 의미하며, 독립변수는 북한의 시장화 관련 문항에 대한 점수척도를 로그변환 한 자료를 의미한다. 또한 독립변수로 성별과 점수척도와 성별의 교차항을 포함하였고, 통제변수는 유의한 변수가 없어 투입하지 않았다. 소득은 자가소득만을 활용하였으며, 자가소득과 점수척도 간의 상관계수는 0.011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 5)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식 5) 추정결과

자가소득비율	계수	표준오차	t	P> t
Score(로그)	-0.013	0.058	-0.22	0.826
성별(여성=1)	-0.021	0.095	-0.22	0.822
교차항(성별×Score)	0.029	0.838	0.35	0.729
상수항	-0.010	0.066	-0.15	.882
요약통계량	$R^2 = 0.0078$, $F = 0.36$			

주) ***: 1%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함

가설 7의 검정결과 여성더미변수와 점수척도 변수의 교차항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아 여성의 조직관계에 대한 의지 또는 의견은 시장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어 자가소득의 7.1조치 전·후간 증감자료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경제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가지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7.1 조치 이후 시장화 현상은 북한 여성의 역할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북한 여성의 가계역할 강화 및 개인역량 강화는 시장화 특히 자가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각의 가설의 채택 및 기각여부는 [표 16]과 같다.

[표 16] 가설채택/기각 여부

항목	가설	채택여부
1	시장의 공식운영 후 여성의 실질 근로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기각
2	시장의 공식운영 후 여성의 실질 자가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채택
3	시장의 공식운영 후 여성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은 남성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높을 것이다	기각
4	시장의 공식운영 후 여성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은 남성의 실질 자가소득 증가율보다 높을 것이다	기각
5	가구소득대비 1인당 소득의 비율 상승은 7.1 조치 이후 북한 여성의 소득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채택
6	전체소득대비 자가소득의 비율 상승은 7.1 조치 이후 북한여성의 소득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채택
7	조직적 특성은 7.1조치를 기점으로 한 근로소득 및 자가소득 증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IV.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북한여성의 역할변화 영향과, 북한여성의 구체적인 역할에는 어떠한 역할들이 있는지 실증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시장기능과 관련된 선행연구논문, 북한여성 역할과 관련된 북한문헌, 북한이탈주민과의 설문조사 자료 등이다.

북한여성의 역할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생활환경 요인으로서 시장기능 변화, 사회생활환경 요인으로서 가족과 조직과의 관계, 여성개인계발 요인으로 요약되었다. 이러한 요인 영향 하에 시장을 통해 변화된 북한여성의 역할은 경제사회변화의 주요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북한경제에서 시장이 공식 운영된 이후 시장화가 북한여성의 역할을 변화시키는데 제한된 한계를 갖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북한여성의 역할제고를 위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이러한 요인들 중 시장화에 따른 거래규모 및 북한 경제주체들의 전반적 소득 확대가 북한여성의 소득 규모, 가계경제유지, 개인역량 및 조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 제고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시장화는 여성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남성에 비해 중요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남성 근로자의 '8.3근로자'화와 연관된다.

셋째, 시장화에 따른 북한여성의 역할변화의 매개변수 중 가족관계와 개인역량은 여성의 경제

적 역할 확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조직관계에 대한 변수는 불완전한 자료로 인해 한계가 있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북한당국이 여성들의 가계경제로의 회귀를 정책적으로 허용한 것과 연관된다. 그 결과 북한여성의 사경제활동, 즉 시장을 통한 자가소득 취득 및 가계경제 유지는 생산현장에 종사해야 할 직장여성 근로자보다 조직생활 참여의 제약을 적게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시장화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결합되어야 지속적인 확산이 가능하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데에는 문화적으로 뿐리박힌 남녀 불평등의 영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7.1조치 이후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북한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이는 시장화 직후 나타난 현상(남성 근로자의 '8.3근로자'화 등)이 집계되어 나타난 데 기인하는 현상이므로, 향후 변화상황을 반영한 분석을 진행할 필요를 제기한다.

둘째, 북한여성의 효과적인 생활관습 체득, 역사의 한쪽 수레바퀴로서의 사명 실천을 통한 자기효능감 등의 역할제고는 북한당국에 의한 남녀불평등 초래의 복합적이고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

셋째, 북한여성의 역할(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고취, 가계경제 자립생존 문제의 해결, 경제사회적 변화의 선도 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생활관습의 교정과 자아존중감 확립 등 개인의 역량 제고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자가소득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확대되어 가는 부분은 북한 여성의 시장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의 성공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 북한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방될 경우 여성들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연구의 한계 및 보완방법

본 연구는 시장화에 따른 북한 여성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북한 여성의 근로소득, 자가 소득 자료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소득자료에 의존해 분석을 실시하여 적절한 대리변수를 찾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다. 특히 조직관계 대리변수의 경우 시장경제체제 도입에 대한 응답자 의견을 척도화 하여 변수를 구성하였으나, 사회주의 조직관계가 시장경제체제 도입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수의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북한 여성을 대표할 최적화된 대상 선정을 바탕으로 한 심층 설문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북한 여성 역할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경로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권수현, “북한조선민주여성동맹의 변화와 지속”, 『사회과학연구』, 제18권 2호, 2010.
- 구수미 외, “체제변화시기 북한도시여성의 지위변화: 중국 도시여성과의 비교”,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2호, 2005.
-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13.
- 김병연, “북한경제의 시장화: 비공식화 가설의 평가를 중심으로”, 제6회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2007.
-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김석진, “북한의 체제전환: 비공식 경제의 성장”, 통일부 전문가 브라운백 발표자료, 2016.
-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통일연구원, 2014.
- 김석향,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 담론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1호, 2006.
-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9.
- 김일성, “여성동맹의 금후과업에 대하여: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제1차 대표자회에 참가할 공산당 원인 녀맹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제3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
- 남성욱,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 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 문제연구, 제 40호, 2003.
- 리기반 외, 『주체정치경제학(대학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4.
- 림금숙, “90년대 이후 조선녀성들의 사회경제활동참여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연변대학 여성문제연구중심, 1999.
- 문장순, “북한 가정혁명화의 여성의 위상”, 『남북문화예술연구』 제16권, 남북문화연구소 남북 문화예술학회, 2015.
-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 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 추정”, 한은조사연구 2002-3, 한국은행, 2002.
- 박영자, “융합연구 시각에서 본 북한 시장화와 행위자와 상호작용”,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 연구원, 2011.
- 박영자, “북한의 여성정치: 혁신적 노동자-혁명적 어머니로의 재구성”, 『사회과학연구』, 제13권 1호, 2005.
- 박현선 외, “선군시대 실현과 선군가족”, 『선군시대의 북한여성의 삶』,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 연구원 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 한국정치학회, 2012.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정은 집권 2년,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14 북한주민의 의식과 사회변동 조사결과, 2014.
- 양문수, “북한 시장화에 대한 재조명”,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3호, 2014.

- 우승지, “북한 ‘경제개혁’의 현황과 전망”, 연구보고서, 외교안보연구원, 2002.
- 이미경·구수미, “1990년대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 북한연구학회 2004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 이석 외, 『북한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경제인문사회 협동연구총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이영훈,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 시장화에 따른 일상과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풀빛 출판사, 2004.
- 이우영, “최근 북한사회와 주민생활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2.
-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임순희 외,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통일연구원, 2004.
- 정형곤 외, “북한의 시장화 현상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정은찬, “북한의 시장화 현상과 주민 문화행태변화 분석”, 『남북문화예술연구』 제16권, 남북문화 연구소 남북문화예술학회, 2015.
- 조정아 외, 『북한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경제인문사회연구 협동연구총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홍민,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 공간구조, 도시정치, 계층변화』, 통일연구원, 2015.

〈해외문헌〉

- Elsenhans, Hartmut, “Rent, State and the Marke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ransition to Self-sustained Capitalism,” Paper for the 10th Annual Meeting of the Pakistan Society of Development Economists in Islamabad, 1994
- Marx, Karl, Capital,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8.

〈기타자료〉

- 데일리NK, ‘북한, 사상통제 강화..10대원칙 따른 총화 지시’, 2013.9.
- 매일경제, ‘북한을 확 바꾼 장마당 20년..’, 2015.1.1.
- 크리스천투데이, “시장 활성화, 북한 복음화에 획기적 기회”, 2016.3.